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문제 1】 'K커피'라는 영업표지를 가진 가맹본부 甲은 'K커피'의 추출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갖게 된 것으로 믿고, 乙에게 'K커피'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甲의 제안을 믿고, 그 믿음에 과실이 없는 가맹점사업자 乙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노하우 등을 지원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 아래 물음 1), 물음 2)는 별개의 독립된 문제임

물음 1) 가맹점사업자 乙은 'K커피'의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甲이 노하우라고 주장하는 'K커피'의 추출방법은 가맹계약의 체결 당시 널리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이로 인해 가맹계약의 목적달성이 계약체결 당시부터 전부 불가능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甲이 조금만 주의하여 확인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가맹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으로 인해 乙이 가맹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 5백만 원, 가맹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乙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 3천만 원, 다른 가맹본부 丙으로부터 甲보다 더 유리한 제안을 받고도 甲과의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이를 거절함으로 생긴 손해 3천만 원이 乙에게 발생하였다. 乙은 甲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하여, 위 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乙이 주장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그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위 각 손해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가맹점사업자인 乙은 가맹본부 甲과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교육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자신의 동생이 경영하는 커피점에서 甲으로부터 공급받은 커피원두와 甲의 상표가 표기된 종이컵을 비롯한 부자재를 사용하여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구두로 시정하도록 주의를 주었음에도 乙은 시정을 하지 않았다. 甲은 2019년 3월 2일 乙에게 4월 15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이때, 甲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가맹본부 甲과 가맹점사업자 乙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하였다. 이후 가맹계약의 기간 중에 乙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자, 甲은 乙에 대하여 위 위약금약정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甲이 요구하는 과중한 위약금이 부당한지에 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4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과중한 위약금이 부당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행정적 제재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가맹본부 甲과 가맹점사업자 乙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 위 가맹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甲과 乙이 각각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및 상호간의 관계(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